

이 보도자료는 2023. 7. 6.(목) 14:00부터 보도하여 주시고,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찰
PROSECUTION SERVICE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전문공보관 김희경

전화 02-3219-4420 / 팩스 02-3219-2397

보도자료
2023. 7. 6.(목)

제 목

증권범죄합동수사단 복원 후 1년 간 불공정거래사범 등 373명 기소, 48명 구속

공소제기 후 공개의 요건 및 범위

- 피고인, 죄명, 공소사실 요지, 공소제기 일시, 공소제기 방식, 수사경위, 수사상황, 범행경과 및 수사의 의의 등 (제11조 제1항)
- 제9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미리 공개가 필요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소속 검찰청의 장의 승인이 있는 경우(제11조 제2항 제2호) 제7조 제2호 내지 제6호의 공개금지정보

- '20. 1. '증권범죄합동수사단' 폐지 후 자본시장 불공정행위 대응역량이 약화되어 금융·증권시장에서 시세조종, 사기적 부정거래 등이 끊이지 않고 있고, 규제 공백을 틈타 가상자산시장에서의 불공정행위 역시 폭증하고 있음
 - 금융·증권 및 가상자산 관련 범죄는 시장 참여자들의 재산을 한순간에 휴지조각으로 만드는 약탈범죄로서, 이로 인해 시장의 신뢰가 무너지면 투자 감소, 기업 자금조달 비용 증가로 인해 국가경제 발전 저해로 직결됨
- 이에 '22. 5. 서울남부지검에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을 출범시켜, '23. 5.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로 정식 직제화하고 산하에 전담 수사과를 설치하는 등 중대 금융·증권 범죄 수사체계를 정비하였음
 - 합동수사단 복원 후 중요사건에 대해서는 사건 초기부터 신속한 직접 수사가 가능해지고 관계기관 전문수사인력의 안정적 확보를 통해 효율적인 수사를 진행함으로써 조직적 범행을 발본색원할 수 있게 됨
 - 또한 주가폭락 사태 이후 유관기관과 함께 '비상 조사·심리기관협의회'를 운영하며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대응체계를 개선하고, '중요 금융·증권범죄 패스트트랙 제도' 등을 통해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과의 협업수사 체계를 공고히 하여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중요 사건에 신속·엄정하게 대응 중임

- 그 결과 지난 1년간('22. 7. ~ '23. 6.) 서울남부지검은, 자본시장을 교란하고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야기한 불공정거래사범 등을 집중 수사하여 총 373명을 기소(48명 구속, 325명 불구속)하고, 범죄 수익 합계 1조 6,387억 원을 추징보전함으로써 범행 동기를 원천 차단 하였음 [▶ 주요 수사 사례 별첨]
- 무자본 M&A를 통한 주가조작, 선행매매·다단계 등 불법 주식 리딩방 운영, 전환사채를 악용한 회사자금 빼돌리기 등 전통적인 금융·증권 범죄에 대해 전문 주가조작세력, 기업사냥꾼, 금융브로커 등을 엄단하고,
- 전례없는 시세조종으로 인한 주가폭락 사태에도 신속하게 수사팀을 구성, 수사에 착수하는 한편 금융당국과의 협업을 통해 즉각 대응하였으며,
- 최근 사회적 문제화 된 가상자산 이용 범행, 가상자산 거래소 상장비리 등 신종범죄에 대해서도 적극 수사하였음

구 분	주요 수사 사례
무자본 인수·합병(M&A)을 통한 주가조작	▶ 에디슨EV 등 주가조작세력 사건
	▶ PHC 주가조작 사건
	▶ 대우조선해양건설 등 기업비리 사건
	▶ 앤디포스 등 주가조작세력 사건
	▶ 에스마크 주가조작세력 사건
	▶ 기업사냥꾼으로부터 수익 원을 수수한 금융브로커 사건
기타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사범	▶ SG발 주가폭락 사태
	▶ 동일산업 등 5개 종목 주가조작 사건
	▶ 불법 리딩방 사건
전환사채 악용 사범	▶ (주)비덴트 등 사기적 부정거래 사건
가상자산 범죄 등 신종범죄	▶ 테라루나 사건
	▶ 코인원 상장 비리 사건

- 향후에도 서울남부지검은, '단 한 번의 주가조작만으로도 패가망신한다'는 원칙이 자본 및 가상자산 시장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엄정한 수사를 통해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하는 한편 최근 국회를 통과한 가상자산법 시행(공포 후 1년)까지 처벌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상자산 관련 범죄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하겠음

1 무자본 인수·합병(M&A)을 통한 주가조작**가. 에디슨EV 등 주가조작세력 사건****<사건 개요>**

- ▶ 쌍용자동차(주) 인수 및 대규모 자금조달을 가장하여 (주)에디슨EV 등 2개 코스닥 상장사의 주가를 조작함으로써 약 12만 5,000명의 소액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합계 1,819억 원 상당 부당이득을 취득한 사건[자본시장법위반 등]
- ▶ '22. 10. ~ '23. 7. 각 기소(12명 구속, 20명 불구속), 현재까지 범죄수익 1,819억 원 추정보전

○ 주가조작에 따른 피해

- 쌍용자동차 인수 등 국가 기간산업까지 주가조작의 소재로 삼는 대범한 범행으로, (주)에디슨EV 약 12만 5,000명의 소액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쌍용차 희생절차를 지연케 하는 등 국가적 피해가 발생함

○ 수사의 의의

- 장기간 만연되었던 주가조작 범죄를 밝혀내고, 속칭 '국내 주가조작 1인자'로 불리는 주범을 포함한 주가조작세력 20명을 일망타진하고,
- 주가조작 등에 가담한 공인회계사 4명을 기소하는 등 전문가 집단의 모럴해저드 현상에 대해 엄정 대처함

나. PHC 주가조작 사건**<사건 개요>**

- ▶ 코스닥 상장사인 PHC를 무자본 인수한 후, 코로나19 진단 관련 의료기기를 개발해 국내 최초로 미국 식품의약국(FDA) 허가를 받고 수출하는 것처럼 허위 홍보하는 등 사기적 행위로 주가 조작하여 214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하고, 횡령·배임 범죄로 합계 717억 원 상당을 취득한 사건[자본시장법위반 등]
- ▶ '22. 11. ~ '23. 5. 각 기소(7명 전원 구속)

○ 무자본 인수·합병에 따른 피해

- 무자본 인수한 상장사를 이용하여 전환사채 발행, 유상증자 등을 통해 자금 조달한 후 대주주의 비상장주식 고가 취득에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하는 등 횡령·배임 범죄로 상장사 부실 초래하고,
- 코스닥 상장사인 PHC는 '22. 3. 감사의견거절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여 거래정지 처분을 받아 소액주주들에게 심각한 피해가 발생함

○ 수사의 의의

- 코로나19 유행을 기회로 삼아, 무자본 인수한 코스닥 상장사의 코로나19 진단키트 제조·판매 사업 관련 허위 언론보도 등을 통해 주가를 상승시켜 차익을 실현하고, 회사 자산에 대한 횡령·배임 범행을 하는 등 자본시장질서를 교란한 중대한 사건을 수사하여, 실무에 참여한 직원부터 범행을 총괄하고 주도한 실사주에 이르기까지 기업 사냥꾼 일당인 경영진 7명을 구속하여 엄단함

다. 대우조선해양건설 등 기업비리 사건

<사건 개요>

- ▶ (주)한국코퍼레이션, 대우조선해양건설(주) 회장 및 공범들이 가장납입성 유상증자 등으로 285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하고, 가치 없는 비상장주식을 (주)한국코퍼레이션으로 하여금 고가에 매수하게 하여 211억 원의 손해를 가하고, 법인카드로 명품 구입 등 회사자금 임의사용한 사건[자본시장법위반 등]
- ▶ '23. 4. 각 기소(1명 구속, 9명 불구속), 현재까지 범죄수익 600억 원 추정보전

○ 사기적 부정거래 등에 따른 피해

- 오로지 사적 이익 추구를 위하여 자본시장질서를 교란시키고, 회사 자금을 유용하는 등 방만한 경영으로 건설한 코스닥 상장사였던 (주)한국코퍼레이션은 상장폐지 결정을 받았고, 중견 대우조선해양건설(주)는 임직원들의 임금·퇴직금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부실화되어 회생절차 중임

○ 수사의 의의

- 치밀한 사전 계획 하에 사채조달 및 변제방법까지 모의하고, 바이오사업을 주가부양 소재로 삼기 위해 거액의 법인자금 횡령·배임 범행을 저질렀으며, 경영난에 처한 회사의 법인카드로 명품 쇼핑을 하고 법인이 리스한 고급 외제차를 사적으로 이용하는 등 “단순 주가조작 사건이 아닌 기업비리의 종합판”인 사건을 수사하여, 범행을 주도한 대우조선해양건설(주) 회장을 구속하는 등 전형적인 ‘기업사냥꾼 범죄’를 엄단함

라. 앤디포스 등 주가조작세력 사건

<사건 개요>

- ▶ 코스닥 상장사인 인콘.앤디포스를 무자본 인수하고, 그 과정에서 허위 내용을 공시 및 보도되게 하여 주가를 조작한 후 보유주식을 고가에 매도하여 약 1,600억 원 상당 부당이득을 취득한 사건[자본시장법위반 등]
- ▶ '23. 4. 구속 기소(1명 구속)

○ 무자본 인수·합병에 따른 피해

- 무자본 인수·합병은 주가를 부양하는 과정에서 허위 공시 등을 통한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가 발생하기 쉽고, 이러한 허위 공시는 투자자들의 투자 오판을 유발하고 자본 시장의 신뢰성을 하락시키며 무고한 일반 투자자들에게 상당한 피해 발생함

○ 수사의 의의

- 코로나 진단키트 관련 허위 보도 자료와 관련된 패스트 트랙(Fast-track) 사건을 직접 수사하여, 1,600억 원 대 부당이득을 취득한 무자본 M&A 범행을 밝혀내어 무자본 인수를 통한 '기업사냥꾼'의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를 엄단함

마. 에스마크 주가조작세력 사건

<사건 개요>

- ▶ 사채 등 타인 자본으로 코스닥 상장사 에스마크를 인수한 후 허위 언론보도 등을 이용한 부정거래로 약 231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하고, 약 718억 원의 회사 자금을 빼돌려 에스마크를 상장폐지에 이르게 한 사건[자본시장법위반 등]
- ▶ '22. 7. 15. 각 기소(3명 구속, 1명 불구속)

○ 범행의 중대성

- 코스닥 상장사를 무자본 인수 후 자금 조달방법 등 허위 공시, 사업 추진 등 허위 언론보도 등을 이용한 사기적 부정거래 범행으로 231억 원 상당 부당이득 취득하고, 허위 물품공급계약·용역계약 체결, 대여 약정 등을 통해 거액의 회사 자금을 횡령함

○ 수사의 의의

- 코스닥 상장사를 무자본 인수한 후 허위 언론보도 등을 통해 주가를 상승시켜 차익을 실현하고, 회사 자산에 대한 횡령·배임으로 호화 생활을 영위한 기업사냥 세력의 범행 전모를 규명함
- 금융범죄 수사 최초로 무자본 M&A 및 부정거래·자금횡령 등 범행에 활용된 21개 법인에 대해 해산명령청구함으로써 향후 기업사냥 등 다른 범행 도구로 활용될 가능성 원천 차단함

바. 대출 알선 대가로 기업사냥꾼으로부터 수익 원을 수수한 금융브로커 사건

<사건 개요>

- ▶ 금융 브로커들이 기업사냥꾼과 결탁하여, 기업사냥꾼이 무자본 인수한 2개의 부실 상장사가 금융기관에서 대출, 유상증자로 함께 675억 원 상당의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알선하고, 그 대가로 함께 5억 원 상당을 수수한 사건[특경법위반(알선수재)]
- ▶ '22. 8. ~'22. 10. 각 기소(4명 구속)

○ 금융브로커 범행으로 인한 피해

- 금융브로커들이 친분 있는 금융·증권회사 임직원을 소개하여 기업사냥꾼의 자금 조달(대출, 유상증자)을 알선하고, 이를 통해 조달된 자금이 유출되어 부실화된 상장사들이 전부 상장폐지 되었으며, 저축은행의 대출채권은 전액 부실화 되어 투자자들의 피해는 물론이고 결국 국민들에게 손실이 전가됨

○ 수사의 의의

- 기업사냥꾼과 결탁하여 기업사냥꾼이 무자본 인수한 부실 상장사가 금융기관 대출, 유상증자를 통해 거액의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알선하여 자본시장의 투명성·건전성을 해하고, 다수의 일반투자자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발생시킨 금융 브로커를 적발, 전원 구속하여 엄단함

② SG발 주가폭락, 동일산업 등 5개 종목 사건 등 관련 주가조작

가. SG발 주가폭락 관련 주가조작 사건

<사건 개요>

- ▶ '19. 1.~'23. 4. 21. 영업팀, 매매팀, 정산팀 등 대규모의 조직화된 시세조종 세력이 무등록 투자일임업 운영을 통해 투자금을 모집하고, 장기간 점진적으로 주가를 상승시켜 금융당국의 감시를 피하는 방법으로 코스닥 8개 종목의 주식의 시세를 조종하고, 7,305억 원 상당 부당 이득을 취득한 사건[자본시장법위반]
- ▶ '23. 5. 26. 총책 라덕연 등 구속 이후 현재까지 8명 구속 기소, 현재까지 범죄수익 7,305억 원 추정보전

○ CFD 계좌 등 악용에 따른 피해

- 시세조종 과정에서 주식 매집량을 늘리기 위해 과도한 신용매매 및 CFD 사용하여 주가 하락시 반대매매에 취약한 구조 형성하고, 실제 주가하락으로 인한 SG증권발 반대매매로 주가폭락 사태 발생, 소액투자자들에게 큰 피해 유발함

○ 수사의 의의

- 신속한 수사팀 구성 및 금융당국과의 협업을 토대로, 주가폭락 사태 발생 후 20일 만에 총책 라덕연 구속, 약 2달 만에 이사급 피의자 8명 구속
- *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의 직접수사 기능 부활 및 Fast-Track 제도를 통한 신속한 대응
- 전례없는 기업형 시세조종 사건을 수사하여, 무등록 투자일임업을 통한 투자금 모집, 금융당국의 감시를 회피하기 위한 휴대전화 이동매매, 다수의 법인을 이용한 허위 명목의 투자 수익금 정산과정 등 범행 전모를 면밀히 밝힘

나. 동일산업 등 5개 종목 주가조작 사건

<사건 개요>

- ▶ '20. 1.~'23. 6. 14.까지 소액주주운동을 빙자하여 동일산업 등 코스닥 4개 종목의 주식 시세를 조종하고 부당이득을 취득한 사건[자본시장법위반]
- ▶ '23. 7. 6. 주범 3명 구속영장 청구, 현재까지 범죄수익 104억 원 추정보전

○ **소액주주운동을 빙자한 신용매수 시세조종의 폐해**

- 유통주식수가 적은 종목을 대상으로 신용매수 및 투자자들의 자금 차입을 통해 **차명 계좌를 이용한 물량 소진** 등의 방법으로 주가를 끌어올려 주가 하락에 따른 반대매매에 취약한 구조를 형성함
- 실제 주가하락으로 인한 신용 매수 계좌의 반대매매로 주가폭락 사태 발생, 무고한 소액투자자들에게 큰 피해 유발함

○ **수사의 의의**

- **주가폭락 사태 직후 신속한 수사**를 진행하였고, 폭락 사태 이후 투자자 보호를 위한 거래정지가 되자, 즉시 피의자들에 대한 추정보전청구하여 범죄수익 104억 원을 보전하고, 거래 재개되도록 하는 등 신속히 대응함

다. 불법 리딩방 사건

<사건 개요>

- ▶ 유튜브 주식방송에서 5개 종목 매매추천을 하면서 선행매매하여 약 58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사건 등 카카오톡, 유튜브 주식방송, 주식전문방송 등 주식리딩을 악용한 선행매매 사건 집중 수사[자본시장법위반]
- ▶ '22. 12. ~ '23. 6. 2명 구속 기소, 4명 불구속 기소, 64억 8천만 원 추정보전

○ **주식 리딩(Leading)을 악용한 선행매매 등 불공정거래**

- 일반 개미투자자들은 '단기 고수익 보장', '환불 보장' 등의 허위·과장 광고에 속아 **고가의 유료회원 서비스에 가입**한 후, 불법 주식 리딩을 하는 자칭 주식전문가의 추천을 믿고 주식을 매매했다가 큰 손실을 입게 되고 **다수 피해자* 발생**함

* '20. 12. ~ '21. 2.경 A카카오톡 리딩방 회원(3개월 100만 원) 300여 명의 손실액은 약 150억 원으로 추정됨

○ **수사의 의의**

- 리딩방 운용자들이 이용자들을 '**물량받이**(선행매매 피해자)'로 삼아 막대한 부당이득을 취득하고 있어 구조상 이용자들이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음을 명확히 밝혀 주요 가담자들을 엄단함
- 불법 주식 리딩 범행이 **미인가 집합투자업, 유사수신행위 등 다른 범죄와 연계**되어 자본시장의 건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사실도 규명함

라. 슈퍼개미 시세조종 및 사기적 부정거래 사건

<사건 개요>

- ▶ '22. 5. 19.~7. 6.까지 코스닥 상장사에 대하여 무상증자 테마주 편입을 위한 허위 공시와 증가관여 등 복합 시세조종 방법으로 46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업투자자 사건 **[자본시장법위반]**
- ▶ '22. 11. 10. 구속 기소(1명 구속), 46억 원 기소전 추정보전
- ※ 1심에서 부당이득에 관하여 이유무죄 선고 후 항소심에서 시세조종 제공자금(이른바 '시드머니') 특정하는 공소장 변경하고 몰수 구형

○ 경영권 확보 등을 빙자한 복합 시세조종(시세조종+부정거래)의 폐해

- 단기에 주식을 매집한 뒤 시세조종으로 부당이득을 취할 목적임에도 마치 경영권 확보를 위해 자기 자금으로 주식을 매수한 것처럼 **기업 건전성에 관한 허위 공시**를 하여 주가를 부양하는 한편, 시장가 매수주문을 걸어 주가 급락을 방지하면서 매집한 주식을 전량 매도하는 '**복합 시세조종**'*이 만연함

* 허위 공시를 통한 부정거래와 현실거래의 시세조종을 모두 이용한 인위적 주가 부양 방법

○ 수사의 의의

- **테마주를 악용한 허위 공시 및 시세조종**으로 시장에 악영향을 끼치던 주가조작 사범을 적시에 구속하여 시장 안정화에 기여하고, 현재 보유주식 등에 추정보전 조치하여 추가 범죄 예방을 도모함
- 1심에서 실행 선고하면서 부당이득액을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유무죄 선고받자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을 통해 **시세조종에 제공된 자금을 특정하고 이에 대한 몰수** ('21. 12. 시행)를 추가 구형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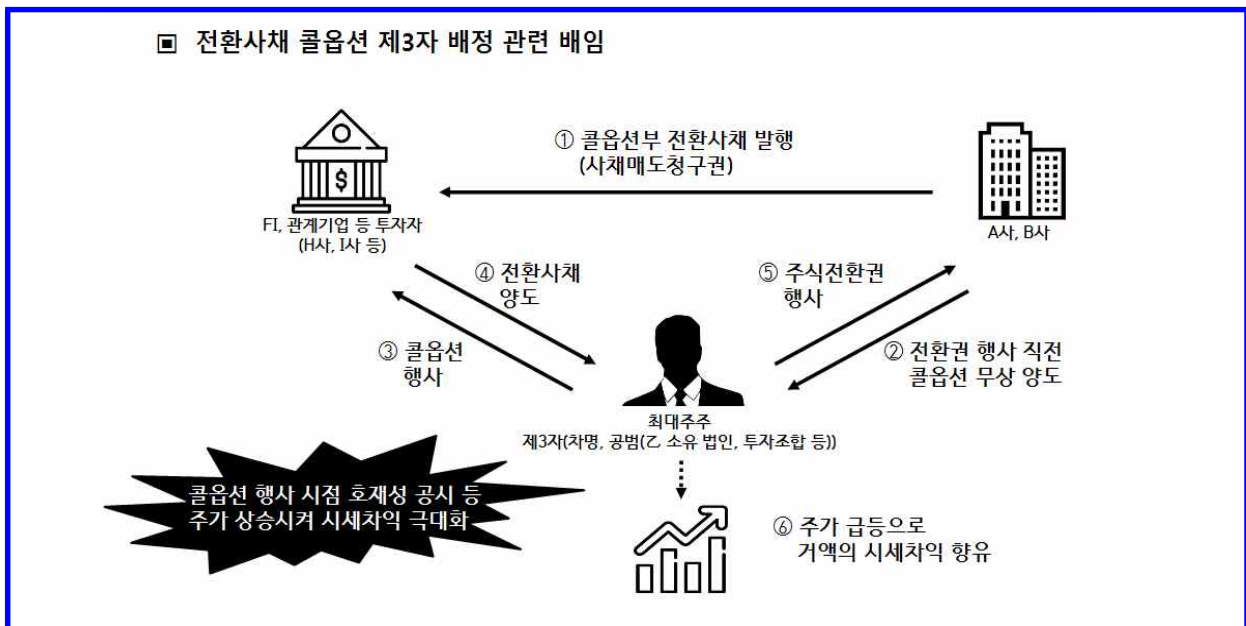
③ 전환사채 악용 사범

<사건 개요>

- ▶ 상장사 A, B사의 회장 甲이 최대주주의 지분매각 사실을 은폐할 부정한 목적으로 변동 보고를 누락한 채 최대주주 지분을 차명 계좌로 인출하여 선매도하고, 콜옵션 행사 등으로 전환사채를 양수하여 전환한 동수(同數)의 주식을 최대주주 계좌에 재입고하는 사기적 부정거래 범행으로 함께 350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하고**[자본시장법위반]**
- ▶ A, B사가 발행한 전환사채의 콜옵션 대상자를 지정하는 방법으로 전환사채를 회장의 차명 등으로 인수하여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주식을 취득하게 함으로써 A, B사에 321억 원의 손해를 가한 사건**[특경법위반(배임)]**
- ▶ '23. 2. 회장(甲) 등 3명 구속 기소, 1명 불구속 기소, 콜옵션 관련 배임 범행에 적극 가담한 상장사 C사 회장(乙) 구속 수사 중, 甲이 B사 명의로 보유 중인 약 351억 원 상당 주식에 대해 추정보전

○ 전환사채를 이용한 사기적 부정거래의 폐해

- 피고인 甲은 전환권 행사 공시 전 몰래 차명 계좌로 최대주주 보유 주식을 인출하여 선매도하고 이후 엮가로 취득한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여 선매도한 주식 수만큼 채워 넣음으로써 부정한 방법으로 차익을 실현하는 등 전환사채 제도를 악용하여 주식시장의 공정성을 해침
- 또한 전환사채 발행회사가 보유한 콜옵션을 자신의 차명이나 공범에게 무상으로 부여하여 회사에 전환가액과 공정가액과의 차액만큼 손해를 입혔고, 취득한 주식 대부분을 장내 매도하여 주식 희석화, 주가 하락으로 인한 손실을 종국적으로 소액주주들에게 전가시키고, 그 결과 피해회사는 거래정지됨



○ 수사의 의의

- 전환사채 발행의 동기, 차명계좌를 이용한 선매도 방법, 제3자에게 무상 부여된 콜옵션과 회사의 손실액을 밝히는 등 **전환사채를 악용한 범행 전과정을 규명**하고, 피의자가 B사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약 351억 원 상당의 주식을 확인해 추정보전결정을 받음으로써 **불법 수익을 박탈**하였음
- 또한 자신의 이익을 위해 피고인 甲의 배임 범행에 적극 가담한 C사 회장(乙)의 공모 관계를 밝혀 구속 수사 중인바 전환사채 제도를 악용한 범죄에 가담한 자들은 전부 **엄단할 예정**임

4 가상자산 범죄 등 신종범죄 대응

가. 테라루나 사건

<사건 개요>

- ▶ 테라폼랩스 일당이 스테이블 코인 블록체인 기반 플랫폼 사업(테라프로젝트)이 불가능한 것임에도 거래조작, 허위홍보, 결제정보 유출 및 복제 등 부정한 수단을 동원하여 루나 코인 시가총액 50조 원을 증발시키고 최소 4,629억 원 상당 이익을 취득한 사건[자본시장법위반]
- ▶ '23. 4. 25. 테라폼랩스 일당 8명 및 이들의 범행을 도운 2명을 각각 불구속기소, 현재까지 범죄수익 7,450억 원 추정보전

○ 가상화폐 관련 범죄 피해

- 가상화폐 관련 사기는 일반적인 증권 범죄와 같이 사업자와 투자자 사이의 현저한 정보 비대칭 상황을 이용한 범죄로써, 불특정 다수가 참여하는 시장을 상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피해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고 심각함

○ 수사의 의의

- 최초로 가상자산 관련 증권성을 입증하여 자본시장법을 의율하여 적극 대응한 사건으로, 블록체인 분석, 계좌 추적 등을 통해 범죄수익 및 그 수익으로 취득한 재산까지 추적하여 현재까지 범죄수익 7,450억 원에 대한 추정보전 결정을 받아 피해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함



나. 코인원 상장 비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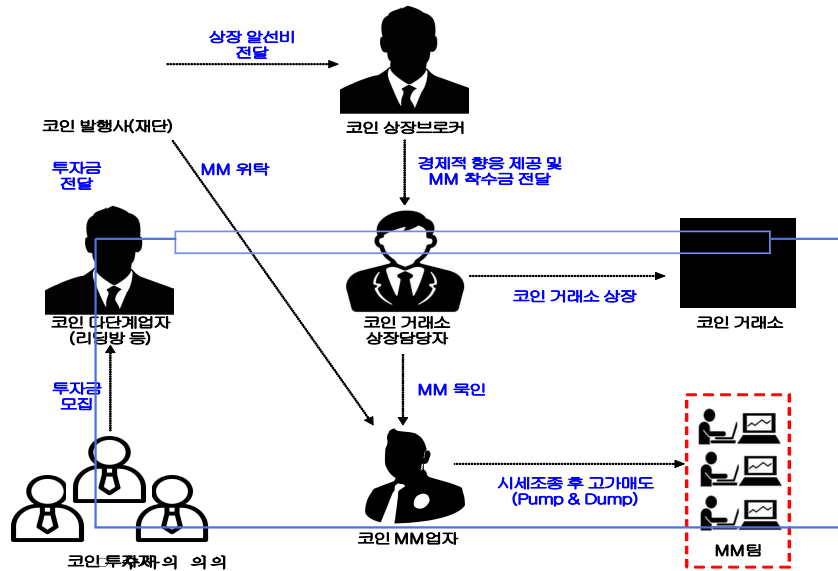
<사건 개요>

- ▶ 국내 3대 거래소인 코인원 가상자산 거래소의 상장 담당 임원과 상장 직원이 약 3년간 거래소 브로커들로부터 코인을 상장시켜 달라는 청탁을 받고 총 29억 8,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사건[배임수재]
- ▶ '23. 1. ~ 23. 4. 코인원 거래소 임·직원 2명, 상장브로커 2명 등 총 4명 구속, 29.8억 추정보전

○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구조적 병폐

- 코인 다단계업자(리딩방, 투자회사 등)들이 코인 상장 前 투자금을 불법적으로 모집하고, 코인 발행업자들은 허위로 프로젝트의 성과를 부풀리며 코인을 홍보하는 한편, **상장 브로커를 통해 거래소에 소위 '상장fee'라는 형태로 금품을 공여하여 코인을 상장 시키고, MM(Market Making, 시세조종) 작업을 통해 코인 가격을 부양한 후 고점에 매각('Pump And Dump')**하여 수익을 나누는 형태의 구조적 병폐가 만연함

한국 코인시장 병폐 구조도



- 내재적 가치가 없는 가상자산의 건전성·사업성을 심사하여 코인의 실제적 가치를 결정하는 '코인상장' 업무를 수행하는 거래소 임·직원들이 가상자산 시장의 Gate-Keeper(문지기) 역할을 방기한 채 장기간 발행재단, 상장브로커들과 결탁하여 선량한 코인 투자자들에게 대규모 피해를 입힌 **구조적 범행을 적발**하여 관련 거래소 직원 및 상장브로커 4명을 전부 구속 기소하여 엄단함
- 배임수재 피의자들의 재산을 철저히 추적하여 **범죄수의 전부에 대하여 추정보전** 청구 인용 결정을 받음 ☑